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박판수 의원 외 35명)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판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9
----------	-----

발의연월일 : 2020. 8. 14.

발 의 자 : 박판수·권광택·박차양
박채아·박창석·이수경
방유봉·남진복·김상조
이동엽·고우현·박영서
곽경호·이재도·박영환
박현국·김성진·최병준
박정현·박태춘·배진석
황병직·김하수·조현일
정세현·홍정근·김득환
이종열·임무석·임미애
정근수·이선희·박용선
남영숙·김진욱·안희영
의원(36명)

1. 제정이유

- 안전한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도지사가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숲길의 운영·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또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숲길의 운영·관리 업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숲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숲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책자 등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및 제23조의2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1조의3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 붙임
- 나.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라.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 붙임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숲길의 운영·관리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제2항의 숲길의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숲길의 운영·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숲길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조성한 숲길의 보수 및 관리
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관리
3.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숲길의 보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숲길의 명칭, 구간, 숲길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책자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등산·트레킹·산림 레포츠·탐방 및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 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트레킹의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11조의5(숲길의 운영·관리)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종합 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관리
2. 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3.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4.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활용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관리청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숲길의 노선 중 다른 숲길의 노선과 연결·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관계 숲길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 숲길관리청이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법무혁신담당관	안 제5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숲길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1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실태조사는 의무사항임
	안 제6조	<문장 수정 필요> - 처벌 => 벌칙
	추가 검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5장의 숲길에 관한 내용 중 숲길연차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숲길 조성·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 조례안에도 반영할지 검토가 필요함

2 규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황 지 훈
입 안 주 무 부 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20. 6. 18.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산림산업관광과)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산림산업관광과		해당 없음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연차별 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 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숲길의 운영·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숲길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안 제6조(홍보)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숲길의 명칭, 구간, 숲길에서의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책자 등을 발간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20년은 조례가 시행되는 7 ~ 12월까지의 추계
- 안 제4조 제1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숲길 조성 사업량('18~'20) 평균×산림청 숲길조사 단가(174천원/km)을 기준으로 예상비용 산출
- 안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숲길 운영·관리 사업량('18~'20) 평균×산림청 숲길 관리사업 기준단가(31,824천원/km)을 기준으로 예상비용 산출
- 안 제6조에 대해서는 도내 23개 시군 및 산림관련단체(50개소)에 홍보물(책자, 팜플릿) 제작을 기준으로 예상 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합계	309,140	2,002,228	2,002,228	2,002,228	2,002,228	8,318,052
연차별 계획 수립 숲길 운영·관리 실태조사	19,140	19,140	19,140	19,140	19,140	95,700
숲길의 운영·관리 및 지원	280,000	1,973,088	1,973,088	1,973,088	1,973,088	8,172,352
숲길 홍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단, 비용추계결과는 2020년도에 시행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익년도부터는 사업수요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197,742	607,668	607,668	607,668	2,628,414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111,398	1,394,560	1,394,560	1,394,560	1,394,560	5,689,638
민간						
기타						
합계	309,140	2,002,228	2,002,228	2,002,228	2,002,228	8,318,052

5. 부대의견

- 조례 시행으로 연차별 계획 수립에 따른 숲길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도내 주요 숲길 홍보를 통해 산행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작성자

- 산림산업관광과 지방녹지주사보 김태호(054-880-3629)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 안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등)
- 안 제5조(숲길의 운영·관리 및 지원)
- 안 제6조(홍보)

나. 비용추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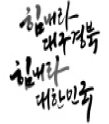
- (연차별 계획 수립 등)
 - 최근 3년간 숲길 조성 사업량('18년 104km, '19년 144km, '20년 83km)의 평균(110km)×산림청 숲길조사 단가(174천 원/km)=19,140천 원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하였음(사업수요에 따라 금액 변동)
 - ※ 도비 30%, 시·군비 70%
- (숲길의 운영·관리 및 지원)
 - 최근 3년간 숲길 운영·관리 사업량('18년 86km, '19년 92km, '20년 8km)의 평균(62km)×산림청 숲길 관리사업 기준단가(31,824천원/km)=1,973,088천원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하였음
 - 1차년도는 시행중인 '20년도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를 기준으로 작성(균특전환)
 - ※ 도비 30%, 시·군비 70%
- (숲길 홍보)
 - 도내 23개 시군 및 산림관련단체(50개소)에 홍보책자 3,000부, 팜플릿 7,000부 제작에 10,000천원 비용추계
 - ※ 도비 100%

2. 비용추계시 중점 고려사항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1. 관련 : 산림산업관광과-5604(2020.7.6.)호, 소재부품산업과-3338(2020.7.7.)호, 환경정책과-14412(2020.7.7.)호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 명	검 토 의 건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 제5조(숲길 운영·관리및지원), 제6조(홍보) 등에 따라 숲길운영·관리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5년간 도비 26억원*(연평균 5.2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향후, 조례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도비로 추진해야 되는 만큼, 지원기준(면적·비용 등)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군특 전환사업에 해당사업 반영을 우선 검토하고, 자체사업은 공모 실시 등 도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020 군특전환사업(숲길조성) : 89억원(도 58, 시군비 31)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용 에 관 한 조 례 안	○ 본 조례안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6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5년간 도비 20억원*(연평균 5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 시·군 지원사업(도비30%, 시군비70%) 외 전액도비 ○ 소요비용은 생물다양성센터 설치(국비지원)을 전제로 추계하였으며, 센터운영, 시·군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이 소요됨 ○ 이에 따라, 최근 세수 감소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비 지속 확보 등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경상북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 원 조 례 안	○ 본 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제6조(예산지원)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5년간 도비 140억원*(연평균 28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 비용추계 대상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 ○ 조례 시행 후,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비의 지속적인 확보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끝.

예 산 담 당 관

수신자 산림산업관광과장, 소재부품산업과장,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재정지원팀장 예산담당관 전결 2020. 7. 9.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8767 (2020. 7. 9.) 접수 산림산업관광과-5735 (2020. 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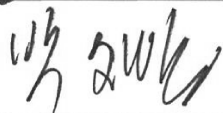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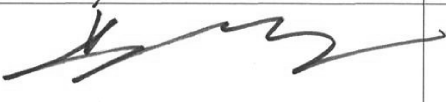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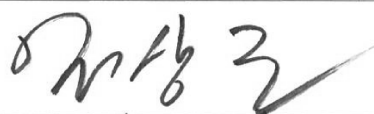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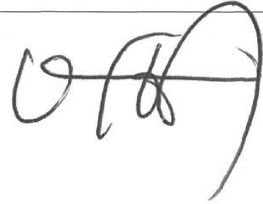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soyiumul@korea.kr / 비공개(5)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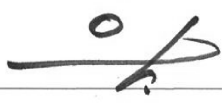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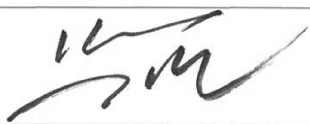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박판수		
권광석		
박차영		
박재아		
박창식		
이수경		
김옥봉		
윤진복		
김상조		
기동업		
고우현		
박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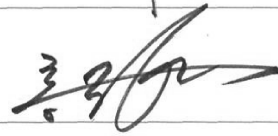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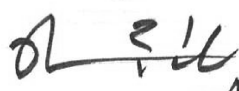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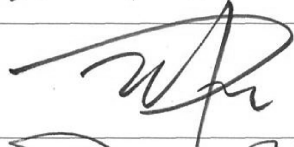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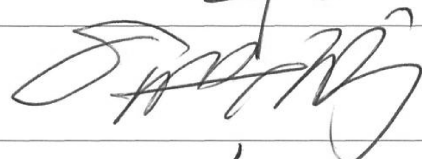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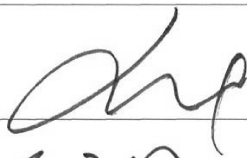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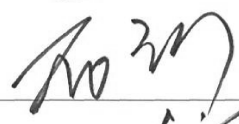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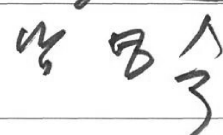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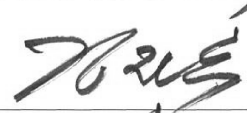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차 정호		
이 재근		
박영환		
방려국		
김성진		
최병관		
박정현		
박재현		
배진석		
황병각		
권하수		
조현일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정 시 현		
홍 정 근		
김 득 환		
이 종 열		
신 우 석		
안 이 애		
정 근 우		
이 천 희		
박 용 신		
남 예 숙		
김 진 울		
안 귀 영		